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도서관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조건 명확화 (안 제5조의2)
- 도서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변경 (안 제7조, 제9조)
- 구세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 (안 제9조의2)
-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 거주용 부동산으로 한정 (안 제14조)
-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전환 (안 제23조)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266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방법을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구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조항을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면서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도서관법, 문화재보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 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바꾸려는 것으로

□ 합법성 측면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공익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적법성 부분은 문제가 없음.

□ 다음, 타당성 측면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 전환 외에는 개정사항 대부분이 관계 법령의 개정 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이거나,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 우리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이 제도 시행이후 아직까지 신청 주택이 없어 세수결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농협중앙회 구관시설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5개지점 모두 구관사업을 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님.

이밖에,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우리구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법적근거와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세입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008. 2. 1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266조 (농어민 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